

## □ 기본 원칙

-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·평가·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‘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’에 따르며,
  -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2급 감염병인 **코로나19 상황**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
  - ※ 적용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

## □ 출결 처리

- (등교중지)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, 「학교보건법시행령」 제22조 및 ‘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’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, 출석인정결석 처리
  -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\*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, 대체학습(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장면의 실시간 원격 송출 포함)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(출석인정결석 처리)
    - \*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나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경우, 시·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하여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가능(세부 사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(22.4.20.) 참조)
    - ※ 등교중지 이외 학생(가정학습, 해외 체류 학생 등)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, 해당 학생의 ‘등교일’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,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
  - (증빙서류)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교사의 ‘출결 증빙 대체자료’ 활용을 권장하며, 활용 및 구성 여부는 학교장 재량사항임
    - ※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,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

유형	등교중지 기간	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(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, 사진 등 포함)
확진자	[등교중지] 격리 해제 시까지 (일반적으로 7일)	· 입원·격리 통지서 ·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(소견서)
의심증상자	[등교중지]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	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·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 ·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(소견서)
PCR 검사자 (예.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,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)	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	· PCR 음성확인서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
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	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	· PCR 음성확인서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·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

- **(기저질환)**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**기저질환\***이 있는 학생의 경우,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**출석인정결석**
  - \* 만성폐질환, 당뇨, 만성신질환, 만성간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혈액암, 항암치료 암환자,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(기저질환자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‘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’ 참조)
  - ※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(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)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 학기 증빙 가능
  - ※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
- **(가정학습)** 2022학년도에 한하여 **교외체험학습 승인(허가) 사유에 ‘가정학습’을 포함하며 일수는 57일 내외로 유지·권고**
  - ※ 가정학습 관련 사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(’22.4.20.)에 따르며, 지역·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·도 교육청에서 결정·운영
- **(코로나19 백신 접종)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,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~2일은 출석인정결석,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**
  -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, **원격수업(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)**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**출석 처리 가능**

	접종일	접종 후 1~2일	접종 후 3일~
<b>출결</b>	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(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)		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(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)
<b>평가</b>	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※ ‘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사’ 사유에 해당하므로, <b>임의변경 불가</b>		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※ <b>임의변경 불가</b>
<b>증빙자료</b>	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	의사 진단서(소견서), 처방전 등	

- ※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. 예)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,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
- ※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,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
- ※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,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 가능하며,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함

## □ 학생평가

- **(등교중지)** 평가 응시가 불가능하므로 **결사 처리(인정점 부여)가 원칙**이며 시·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
- **(인정점 관련 증빙서류) 의료기관(선별진료소 포함)의 검사결과서(PCR 결과,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, 진료확인서) 확인 필수**
  - ※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

- (코로나19 의심증상자)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, 자체 신속항원 검사 키트의 검사결과(음성)를 학교장이 확인\* 후 평가 응시 가능

\*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,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(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,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음성 결과 보호자 확인 등)

※ 확진 후 격리해제 학생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미만인 경우 신속항원검사 불필요하므로 의사의 진단 결과 등에 따라 평가 응시 가능 여부를 결정함

## □ 학생부 기록

- (고등학교 원격수업 운영일수 입력) '출결상황'의 '특기사항'에 '일괄 입력' 기능을 활용하여 전체 학생에 대해 해당 학급의 2022학년도 원격수업 운영일수 입력(입력예시: 원격수업일수 00일)

※ 개인별 원격수업 참여일수가 아닌 '학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'를 입력하며, 위탁학생 또한 위탁 기관이 아닌 '소속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'를 입력함

※ 원격수업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에도 (원격수업일수 0일)로 입력함

- 3학년은 대입전형자료 생성(수시·정시) 시 학생부 마감일(생성 기준일, 별도 안내 예정) 기준으로 원격수업 운영 일수 입력 후, 졸업 시 2022학년도 전체 원격수업 운영 일수로 수정 입력

- 단, 전출입, 재·편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, 해당 학생을 기준으로 원격수업일수 입력

① (전출입) 전출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와 전입교의 원격수업 운영일수를 전출입교에서 각각 구분하여 입력\*

\* (입력예시) “원격수업일수 00일(전출일 까지)”(전출교에서 입력), “원격수업일수 00일(전입일 이후)”(전입교에서 입력)”

※ 학생 전출 시, 출결 특기사항에 해당 학생의 원격수업일수를 입력하여 전송

② (재·편입학) 재·편입학 시부터 학생부 마감일(진급, 졸업, 대입전형자료 생성 시)까지의 원격수업 일수 입력\*

※ 2021학년도 학업중단 후 2022학년도 재·편입학 한 경우, 학업중단 이전과 재·편입학 이후의 원격수업 일수를 각각 입력(중복기간 미삭제)

\* (입력예시) 원격수업일수 00일(학업중단 일까지), 원격수업일수 00일(재입학/편입학/복학 이후)

③ (학업중단) 원격수업 시작일부터 학업중단일까지의 원격수업일수 입력